

#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701 |
|----------|-----|

발의연월일 : 2025. 5. 30.

발의자 : 박은경, 한근수, 이정애,  
김동훈, 원주영

## 1. 제안 이유

청년층의 부동산 구매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임대주택의 분양 또한 다른 사회취약계층에 비하여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 및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등 지원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가. 「청년기본법」

나. 「주거기본법」

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계획
3. 청년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수요
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주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
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예상 소요 비용이 1억 미만이며 한시적 비용임에 따라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 제6조(청년주거지원사업)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행 전 단계인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기준 수립과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전인 2022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기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사업의 경우,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인해 중도에 사업 기준과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매년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구체적인 수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자격, 기간 등이 기 시행중인 사업과 동일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시 재정여건에 따라 비용 추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추계의 결과
  -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된 한시적 경비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9. (생략)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2.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시행일: 2025. 6. 4.] 제17조

## ☑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5. (생략)

**제25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